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현 전화 032-860-4340	보 도 자 료 2023. 6. 9.(금)

제 목	중국산 수산물 41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, 유통기한 허위 표시한 식품수입업자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 · 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❑ **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손정현)**는 **오늘(6. 9.)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**을 **국내산으로 둔갑**시키고, **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**의 **유통기한을 허위 표시**하여 판매한 **식품수입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**하고, 이에 가담한 **보세창고업체 직원**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▷ 인천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,

- ❶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**'시험·검사성적서'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**한 사실,
- ❷ 해당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**보세창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**을 통해 식품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범행에 **보세창고업체 직원이 적극 가담한** 사실 등을 밝히고,
- ❸ **식품수입업체 대표를 직접 구속**하고, **보세창고업체 직원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하고,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창고업체를 양벌규정위반으로 입건하여 함께 기소하였음**

❑ 앞으로도 검찰은 **부정식품 사범**을 엄단함으로써 식품안전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Ⅰ 피고인

○ A (66세, E 식품수입업체 대표, 구속)

○ B (48세, F 보세창고업체 직원)

○ 그 외 식품수입업체 직원 C, 식품제조업체 대표 D, E 식품수입업체(양벌규정 적용), F 보세창고업체(양벌규정 적용)

Ⅱ 공소사실 요지

■ 공소사실 요지

○ A, B, C, D는 공모하여 '20. 7.경부터 '21. 9.경까지 F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**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**하여**[원산지표시법위반]**

○ A, B는 공모하여 '22. 1.경 F 보세창고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**유통기한이 7개월 가량 경과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의 유통기한을 3년 가량 연장되도록 허위 표시하여 판매**하여 **[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]**

○ A, C는 공모하여 '22. 4.경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**시험·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**하여**[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]**

> ※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·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무가 있는바, **'시험·검사성적서'**(자가품질위탁검사용)는 해당 식품이 타르색소, 대장균, 보존료 등의 '유해물질 검출'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 **국내산 물품의 식품안전을 증명하는 서류**임

○ B는 '22. 1.경 F 보세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을 일반 물품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여**[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]**

Ⅲ 주요 수사 경과

○ ’22. 11. **인천해경**, A, C, D, E의 식품위생법위반 등 **불구속 송치**

○ ’23. 2. A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**검찰 인지**

○ ’23. 4. A,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**검찰 인지**

○ ’23. 5. 1. F 보세창고업체 직원 B를 공범으로 **검찰 인지**

○ ’23. 5. 2. F 회사 사무실, A, B 주거지 등 **압수수색**

○ ’23. 5. 23/25. **A, 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/A 발부**

○ ’23. 6. 5. B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, 법원에서 기각

○ ’23. 6. 7. B의 수입식품법위반 및 F에 대한 양벌규정 **검찰 인지**

○ **’23. 6. 9. A 구속 기소, B 등 5명 불구속 기소**

Ⅳ 수사의 의의

■ 송치된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을 재분석하여 문서위조 혐의 규명

○ 검찰은, 경찰에서 압수한 A의 컴퓨터 등 **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하게 재분석**하여, A가 C에게 포토샵을 이용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**시험·검사성적서를 위조**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팩스 전송하여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을 적발

○ 피고인들은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 위하여, **국내에서 제조**된 물품으로 타르색소, 대장균 등의 **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안전한 식품**인 것처럼 시험·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임

- ▸ 국내산 제품이 아니어서 ‘품목제조신고번호’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**기존 국내산 오징어젓갈 제품의 품목제조신고번호**를 기재
- ▸ 실제 제조일은 2020. 12.경임에도 **제조일** 2021. 12. 4.경으로 **허위 기재**
- ▸ 마치 2021. 12. 21.경 새로이 시험·검사를 받은 것처럼 **발급일, 검사일 허위 기재**

■ 보세창고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조직적 공모 범행 규명

○ 검찰은, ① 원산지 둔갑 '뚜껑갈이' 작업 및 유통기한 '라벨갈이' 작업이 **모두 보세창고 내에서** 이루어진 점, ② 보세창고업체 직원 B가 해당 창고에 장기간 보관 중이던 **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알선**한 점, ③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대금이 보세창고업체의 **연체 보관료에 충당**된 점 등에 착안하여 **대기업 계열사인 보세창고업체 F 등을 압수수색**하여, **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체 직원의 조직적 공모 범행을 규명**함

○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범행의 **적발이 어려워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죄 중대**한바, **조직적 공모 범행의 실체를 밝혀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려 재범 방지**

> ▸ 보세창고업체 직원 B가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, 보세창고업체 F가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'보수작업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'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았을 것임

■ 식품수입업자 직접 구속하여 식품 안전 저해 사범 엄단

○ 검찰은, 식품수입업체 대표 A에 대하여 ① 원산지 둔갑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제품이 **약 41톤**으로 물량이 많은 점, ② 안전성이 담보된 식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**시험·검사성적서를 위조**하여 거래업체에 행사한 점, ③ 이와 같이 거래업체들을 기망하여 **판매대금 약 1억 6천만 원** 상당을 취득한 점 등을 부각하여 **A를 직접 구속하여 엄벌**에 처함

> ▸ 피고인들은 최근 국내산 오징어 포획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산 오징어젓갈이 중국산 오징어젓갈보다 약 2~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자, 그 시세 차익 상당의 개인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임

※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**유통기한 경과 오징어목살 전량 1,130통(약 11톤)** 및 **원산지 둔갑 오징어젓갈 446통(약 9톤**, 전체 원산지 둔갑 오징어젓갈 중 약 30%)을 즉시 **압류·폐기** 처분함으로써 **부정식품 유통을 차단 및 최소화**하였음▧

[참고자료]

국내산 둔갑 위해 위조한 시험·검사 성적서

※ 시험·검사 성적서 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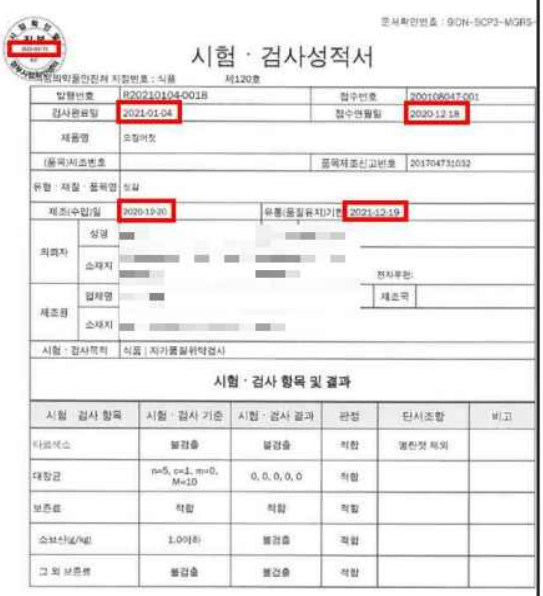

문서확인번호 : 9IDN-SCP3-MGRS-

시험 · 검사성적서

제120호

발행번호	R20210104-0018	접수번호	200108047-001
검사완료일	2021-01-04	접수연월일	2020-12-18
제품명	오징어젓		
(품목)제조번호		품목제조신고번호	201704731032
유형 · 재질 · 품목명	젓갈		
제조(수입)일	2020-12-20	유통(품질유지)기한	2021-12-19
의뢰자 성명			
의뢰자 소재지		전자우편:	
제조원 업체명		제조국	
제조원 소재지			
시험 · 검사목적	식품] 자가품질위탁검사		

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

시험 · 검사 항목	시험 · 검사 기준	시험 · 검사 결과	판정	단서조항	비고
타르색소	불검출	불검출	적합	명란젓 제외	
대장균	n=5, c=1, m=0, M=10	0, 0, 0, 0, 0	적합		
보존료	적합	적합	적합		
소브산(g/kg)	1.0이하	불검출	적합		
그 외 보존료	불검출	불검출	적합		

※ 위조된 시험·검사 성적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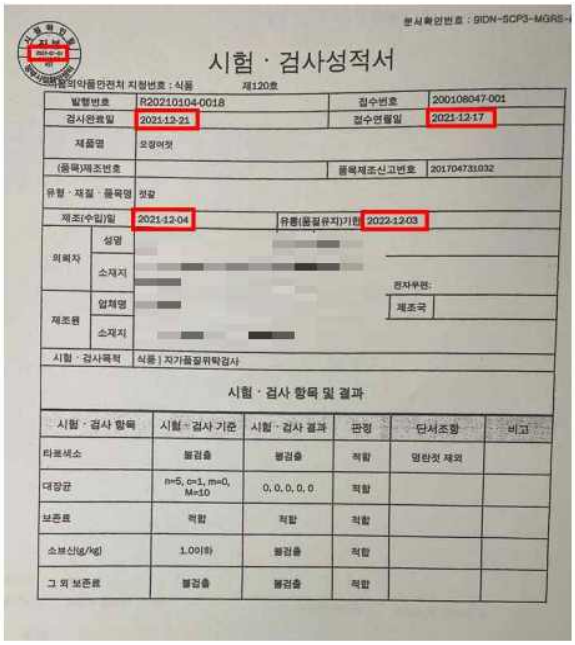

문서확인번호 : 9IDN-SCP3-MGRS-

시험 · 검사성적서

제120호

발행번호	R20210104-0018	접수번호	200108047-001
검사완료일	2021-12-21	접수연월일	2021-12-17
제품명	오징어젓		
(품목)제조번호		품목제조신고번호	201704731032
유형 · 재질 · 품목명	젓갈		
제조(수입)일	2021-12-04	유통(품질유지)기한	2022-12-03
의뢰자 성명			
의뢰자 소재지		전자우편:	
제조원 업체명		제조국	
제조원 소재지			
시험 · 검사목적	식품] 자가품질위탁검사		

시험 · 검사 항목 및 결과

시험 · 검사 항목	시험 · 검사 기준	시험 · 검사 결과	판정	단서조항	비고
타르색소	불검출	불검출	적합	명란젓 제외	
대장균	n=5, c=1, m=0, M=10	0, 0, 0, 0, 0	적합		
보존료	적합	적합	적합		
소브산(g/kg)	1.0이하	불검출	적합		
그 외 보존료	불검출	불검출	적합		

원산지 둔갑 '뚜껑갈이' 작업 전후 사진

※ 작업 전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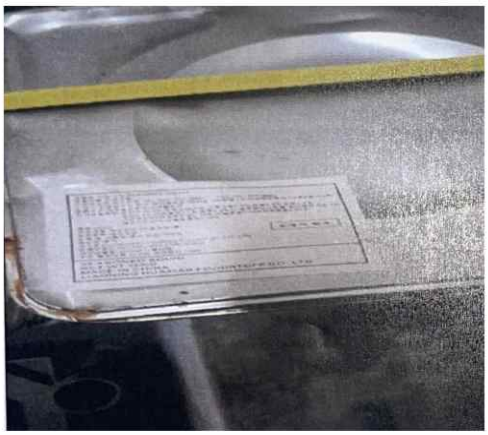

※ 작업 후 사진

▸ 오징어젓갈 양은통 뚜껑에 부착된 원산지가 **중국으로 기재된 '흰색' 라벨**을 떼어낸 후 원산지가 **국내산으로 기재된 '천연색' 라벨**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'뚜껑갈이'

유통기한 '라벨갈이' 작업 전후 사진

※ 작업 전 사진

※ 작업 후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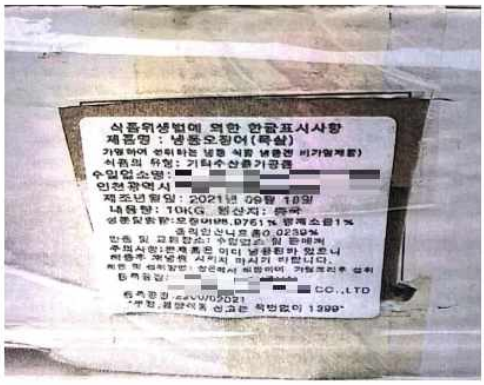

▸ 기존 라벨을 커터칼로 잘라낸 후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'라벨갈이'

▸「제조년월일 : 2018. 6. 16. 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36개월」→ 「제조년월일 : 2021. 9. 18.」

▸ '22. 1.경 **범행 당시 이미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**하였음에도(유통기한 2021. 6. 16.) **마치 유통기한이 2024. 9. 18.경까지인 것으로 유통기한을 3년 연장**

작업 현장 사진

※ 오징어젓갈 원산지 둔갑 작업

※ 오징어목살 유통기한 라벨갈이 작업

■ 압류·폐기 현장 사진

원산지 둔갑 오징어젓갈 압류·폐기 현장

유통기한 경과 오징어목살 압류·폐기 현장